

35

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(법 §167의5, 영 §116의3 등)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적용대상) 인구감소지역에 본·지점 등이 소재하는 법인 ○ (적용요건) 인구감소지역 주민*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고용시점에 해당 기업 소재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사람 ○ (적용내용) 근로자 1인당 45만원(중소 70만원)을 고용하여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감면 ○ (일몰기한) 2028.12.31.

□ 개정내용

- 인구감소지역에 본점·지점·사업장 등이 소재하는 법인이 ①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을 ②상시 근로자*로 고용하여 ③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

- 근로자 1인당 45만원(중소기업 70만원)을 고용하여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감면

* (대통령령)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단기간·단시간 근로자, 최대주주(최대출자자) 및 그 친족 등 제외

□ 적용요령

-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§15)